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 입장료를 무료화하여 입장료 징수에 대한 군민과 관람객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고,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식물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법률 변경(안 제1조)
- (변경 전) 「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
→ (변경 후) 「수목원 ·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

○ 용어의 정의 삭제(안 제2조)

○ 입장료 무료 근거 마련(안 제7조)

○ 입장료 징수조항 삭제(안 제9조)

○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사항 반영
- 식물원 입장 시 보조견 동반 장애인 확대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수목원 ·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11조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18. 10. 8. ~ 2018. 10. 29.)

○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〔기획감사실-7526(2018. 9. 27.〕
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-53534(2018. 9. 27.〕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

○ 지난 2006년 개관하여 무료로 운영하다 2011년 2월, 유료화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의 입장료를 무료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